성균오픈소스소프트웨어센터 내규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오픈소스SW 교육, 실습 지원 및 오픈소스SW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설립한 성균오 픈소스소프트웨어센터(Sungkyun OpenSourceSW Center, 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소프트웨어대학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- 1. 오픈소스SW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
- 2. 오픈소스SW 기술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 대한 산학협력 연구 활성화
- 3. 오픈소스SW 교육, 실습,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
- 4. 오픈소스SW 기술 표준화 사업 자문 및 참여
- 5.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기술 개발과 기술의 상용화
- 6. 저명인사 초청 학술 세미나 개최 및 최신기술 교류
- 7. 기타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4조(기구)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- 1. 센터장
- 2. 운영위원회
- **제5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소프트웨어대학장(이하 "학장"이라 한다)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 장이 임명한다.
 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.
 -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설치)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7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- ② 운영위원은 본교 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
-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- 3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연구기금의 조성, 배정, 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9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

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3 장 연구원 및 조교

제10조(연구원) ① 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연구위원 :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.
- 2. 상임연구원 :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수석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나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다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라. 연구원 :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- 3. 객원연구원 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- 4. 연구원보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- ② 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- ④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**제11조(조교)** ① 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.
 - 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「조교임용규정」에 따른다.

제 5 장 보 칙

제12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내규의 소급적용)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.